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 번호	382
----------	-----

2024. 3. 21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3. 6. / 정현미 의원 등 11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3. 6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3. 2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고, 남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(안 제6조)
-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-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을 규정(안 제8조~제10조)
-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11조~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봉규)

- 본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,
-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시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방안 마련을 통해 민·관이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 문제 및 지역 현안과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,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.